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11. 24. 판결선고

2000. 11. 24. 원본영수



판 결

사 건 99가소113755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00.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999. 3. 20. 피고회사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원고를 비롯한 변호사들 및 참여연대 소속 간사들은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한마음예술회관에서 열린 피고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나. 같은 날 08:50경 원고의 일행들인 참여연대 소속 간사들이 캠코더 및 사진기를 휴대하고 주주총회장으로 입장하던 중 피고회사의 직원인 총회진행요원들과 캠코더와 사진기의 휴대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겼고, 이와는 별도로 원고와 소외 차병직 변호사는 주주총회장의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하여 위임장 확인을 마치고 먼저 주주총회장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총회진행요원 중 1명이 강제로 원고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손가방을 잡아 당긴 후 끈을 당겨 손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였다.

다. 당시 손가방 내에는 주주총회관련서류들, 체육복, 양말, 속옷, 세면도구, 화장품 등이 들어 있었다.

라. 피고회사는 주주총회장 입구에 게시된 안내문에서 주주총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카메라, 캠코더 등은 보관대에 보관시키고, 주류, 인화물질 기타 유해물질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피고회사의 직원들은 원고 및 그 일행들에게 위 안내문의 내용과 주주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전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제공할겠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홍일표, 이호균의 각 일부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권한이 있고, 질서유지권 행사의 일환으로 주류, 인화물질 기타 유해물질의 반입을 금지하고 사전에 허가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회의장 내에서 사진기, 캠코더 등의 촬영장비의 사용 및 소지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주주총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권한범위내의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이와 같

은 제한은 주주총회의 전과정이 합리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경과를 기록, 확인할 수 있도록 전과정을 촬영하였고, 원고 등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점을 설명하였으며, 그 촬영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그 검사방법은 소지품 검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소지자의 동의하에 가방을 검사하거나 소지자가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물건들을 제외한 가방을 보관하게 하는 등의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회사의 직원의 검사방법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불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회사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액은 앞서 본 침해의 정도 및 피고회사와 원고의 관계, 원고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교육정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1. 24.

판사

임법석

임 법 석